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고민정 · 조계원 · 조정식
정을호 · 강경숙 · 맹성규
이성윤 · 조인철 · 김 윤
전종덕 · 김영호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 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,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,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,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,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7항 중 “2분의 1씩 2회로”를 “2분의 1씩 2회, 4분의 1씩 4회
및 12분의 1씩 12회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) ① ~ ⑥ (생략)	제24조(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<u>2분의 1씩 2회로</u>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분의 1씩 2회, 4분의 1씩 4회 및 12분의 1씩 12회로</u> ----- -----.
⑧ · ⑨ (생략)	⑧ · ⑨ (현행과 같음)